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786호 2013년 7월 19일(금)

공 고

-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「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7월 19일

속 초 시 장

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장애인 차별조항 시정
- 나.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각종 박물관·미술관과 그 밖의 기관·단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상호할인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
- 다. 법규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 및 문장은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법규해석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 및 시설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에 대한 문구를 삭제 함(안 제13조)
- 나. 각종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상호할인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(안 제10조)
- 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3년 8월 9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속초시박물관 관리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밖의 의견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－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- － 주 소 : 속초시 신흥2길 16 속초시립박물관 관리담당(217-070)
- － 전 화 : 033-639-2972
- － FAX : 033-639-2430

4. 참고사항

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(신구조문대비표 포함)

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”를 “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 “속초시립박물관” 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 “속초시립박물관” 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 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“어린이”이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(초등학생 포함)

3.“청소년”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

제2조제4호 중 ““군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군인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“어른”이란 함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

6.“노인”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

제2조제7호 중 ““단체”라 함은”을 ““단체”란”으로, “30인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“여행사”라 함은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”를 ““여행사”란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“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”이란”으로, “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게”를 “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“전세버스운송사업체”라 함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”를 ““전세버스운송사업체”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박물관과”를 “박물관”으로, “관장한다”를 “맡아 처리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“의하여”를 각각 “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다음해”를 “다음 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취소한 때”를 “취소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행하는 자”를 “수행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출입하는 자”를 “출입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자 1인”을 “사람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,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속초시민(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) 단, 매주 일요일과 설날·추석·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정한다.

10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

1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내 및 관외지역에 위치한 각종 박물관·미술관과 그 밖의 기관·단체 등과의 상호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를 요율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퇴장을 명”을 “퇴장을 명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술에 취한 사람

제13조제2호 중 “미취학아동 또는 정신이상자”를 “미취학아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”를 “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하는 자”를 “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제외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”로

한다.

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의하여 자료대장과 자료등재카드”를 “따라 자료대장과 자료카드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편의시설”을 “각 호의 편의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 제16조의 규정에 <u>의한</u>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 1. “속초시립박물관” (이하 “박물관” 이라 한다)이라 함은 속초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역사와 미래를 재조명 하고 그에 관한 유물의 수집·전시 및 연구활동을 하는 시설과 이북 5도 지방의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유물 및 발해사를 연구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·보관·연구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. 2. “어린이” 라 함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(초등학생 포함) 3. “청소년” 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4. “군인” 이라 함은 제복을 입	<u>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</u> 제1조(목적) -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 제16조의 규정에 <u>따른</u>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뜻</u>은 다음과 같다. 1. “속초시립박물관” (이하 “박물관” 이라 한다)이란 속초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역사와 미래를 재조명 하고 그에 관한 유물의 수집·전시 및 연구활동을 하는 시설과 이북 5도 지방의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유물 및 발해사를 연구하고 관련유물을 수집·보관·연구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. 2. “어린이” 이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(초등학생 포함) 3. “청소년” 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4. “군인” 이란 제복을 입은 하

은 하사이하의 군인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대원,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5. “어른” 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

6. “노인” 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자

7. “단체” 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.

8. “여행사” 라 함은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
9. “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” 이라 함은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10. “전세버스운송사업체” 라 함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
제4조(업무) 박물관과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.

사이하의 군인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대원,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5. “어른” 이란 함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

6. “노인” 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

7. “단체” 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.

8. “여행사” 란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
9. “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” 이란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10. “전세버스운송사업체” 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
제4조(업무)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기타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

11. ~ 13. (생략)

제4조의2(업무협력 및 지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단체

2. (생략)

3. 「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이북 5도민 관련단체

제7조(개관 및 휴관) ① (생략)

②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· 4. (생략)

5. 기타 시설물의 수리,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③ (생략)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그 밖의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

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업무협력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단체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이북 5도민 관련단체

제7조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,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(생 략)
2.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: 09:00부터 17:00까지

②·③ (생 략)

제9조(관람료 및 시설사용료) ① 전시물을 관람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전시실 또는 기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3.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

④ (생 략)

⑤ 박물관에서 개최·운영하는 문

제8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: 09:00부터 17:00까지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관람료 및 시설사용료) ①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람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전시실 또는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박물관에서 개최·운영하는 문

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
2. (생략)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5.·6. (생략)
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
8. (생략)
9. 속초시민(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) 단, 매주 일요일과 설날·추석·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한다.
10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지

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.

제10조(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
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5.·6. (현행과 같음)
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
8. (현행과 같음)
9. 속초시민(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) 단, 매주 일요일과 설날·추석·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정한다.
10. 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지방

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

11. (생략)

1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13. (생략)

② 다음 각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대상에서 이북5도 가옥은 제외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제12조(요금표의 게시) 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 등” 이라 한다)에 대한 요금표는 인터넷과

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

11. (현행과 같음)

1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13.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대상에서 이북5도 가옥은 제외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관내 및 관외지역에 위치한 각종 박물관·미술관과 그 밖의 기관·단체 등과의 상호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를 요율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.

제12조(요금표의 게시) 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(이하 “관람료 등” 이라 한다)에 대한 요금표는 인터넷과

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
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람 및 이용시설의 제한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
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거
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술에 취한 자

2.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
미취학아동 또는 정신이상자

3. 인화물질, 위험물 또는 악취
를 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

4.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
자

5.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
를 하는 자

제14조(행위의 제한) 관람 및 시설
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
여서는 아니된다.

1. (생 략)

2.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
영을 하는 행위 다만, 야외시설
이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3. ~ 6. (생 략)

제16조(자문위원회) 박물관의 자료
구입 및 전시 등의 필요한 사항에

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
게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람 및 이용시설의 제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
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
수 있다.

1. 술에 취한 사람

2.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
미취학아동

3. 인화물질, 위험물 또는 악취
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
4.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
사람

5.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
를 하는 사람

제14조(행위의 제한) 관람 및 시설
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
여서는 아니된다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
영을 하는 행위 다만, 야외시설
이용의 경우는 제외된다.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자문위원회) 박물관의 자료
구입 및 전시 등의 필요한 사항에

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
시립박물관자문위원회(이하 “위
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
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
성한다.

2. ~ 5. (생략)

제17조(자료의 취득) ① 시장은 전
시·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
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, 기
증, 관리전환, 구입등에 의하여
취득한다. 다만, 구입에 의하여
취득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
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감
정을 거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
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
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8조(소장품의 관리) ① 소장품은
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
대장과 자료등재카드에 등재하여
관리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9조(편의시설의 설치운영) ① 시
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
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

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
시립박물관자문위원회(이하 “위
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
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
성한다.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자료의 취득) ① 시장은 전
시·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
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, 기
증, 관리전환, 구입등에 의하여
취득한다. 다만, 구입에 의하여
취득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
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감
정을 거치고 제16조의 규정에 따
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
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소장품의 관리) ① 소장품은
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대
장과 자료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
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편의시설의 설치운영) ① 시
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
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

호의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(생 략)

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(현행과 같음)